

학교법인 배달학원

2025학년도 198차 이사회 회의록

이사정수	10인	재적이사수	10인
감사정수	2인	재적감사수	2인

1. 일 시 : 2025년 12월 12일(금) 오전 11:00 (회의소집 통보일 : 2025년 12월 1일)

2. 장 소 : 시그마타워 7층 한라라운지 회의실3(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89)

3. 임원 출석 현황

○ 참석 임원

- 이사(9인) : 심상덕, 김익래, 김한원, 민병훈, 이미숙, 송기정, 박용환, 김병란, 이권철, 정승화
- 감사(1인) : 강홍원

○ 불참 임원

- 이사(1인) : 김한원, 감사(1인) : 송동기

○ 참석 교직원

- 학교(3인) : 총장 김응권, 교무처장 오진성, 기획처장 조용남
- 법인(1인) : 과장 박지원

4. 안 건

- (1) 2025회계연도 배달학원 1차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심의
- (2) 2025회계연도 한라대학교 4차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심의
- (3) 교원 인사에 관한 심의
- (4) 정관 변경에 관한 심의

5. 회의내용

의 장 : 이사정수 10인 중 9인이 참석함에 따라 제198차 이사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었음을 선언한다.
 시그마타워 7층 한라라운지 회의실 관리자측의 사정으로 회의장소가 회의실1에서 회의실3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리고, 회의장소변경에 대한 동의를 구하자 이사 전원이 이에 동의한다.

<제1호 안건> 2025회계연도 배달학원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심의

의 장 : 2025회계연도 배달학원 1차 추경예산안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 상임이사에게 설명하게 하다.

상임이사 : 이사들에게 미리 배포한 자료에 의거하여 2025회계연도 배달학원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다.

의 장 : 2025회계연도 배달학원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요청하다.

이 사 들 : 상호 토의 후, 2025회계연도 배달학원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찬성하다.

의 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2025회계연도 배달학원 1차 추경예산안이 원안 <별첨1>대로 의결되었

간서명			
-----	---	--	---

음을 선포하다.

<제2호 안건> 2025회계연도 한라대학교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심의

의 장 : 2025회계연도 한라대학교 4차 추경예산안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 기획처장에게 설명하게 하다.
기획처장 : 이사들에게 미리 배포한 자료에 의거하여 2025회계연도 한라대학교 4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다.
의 장 : 2025회계연도 한라대학교 4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요청하다.
이 사 들 : 상호 토의 후, 2025회계연도 한라대학교 4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찬성하다.
의 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2025회계연도 한라대학교 4차 추경예산안이 원안 <별첨2>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제3호 안건> 교원 인사에 관한 심의

의 장 : 교원 인사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 교무처장에게 설명하게 하다.
교무처장 : 이사들에게 미리 배포한 자료에 의거하여 인사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다.
의 장 : 교원 인사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요청하다.
이 사 들 : 상호 토의 후, 도시인프라공학과 외 22명을 재임용하며, 을 「교원인사규정」 제19조(재임용)규정에 의거하여 재임용 기준을 미충족하여 재임용하지 않기로 하며, 기계자동차공학과 외 6명을 승진임용하기로 만장일치로 찬성하다.
의 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교원 인사가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이 안건은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한다고 하다.

< 다 음 >

● 정년트랙 교원 재임용(12명)

No.	성 명	직 급	소 속	재임용 기간	비고(정년)
1		교수	도시인프라공학과	2026.03.01.~2028.02.29.	2028.02.29.
2		교수	경영학과	2026.03.01.~2029.02.28.	2029.02.28.
3		부교수	컴퓨터공학과	2026.03.01.~2028.08.31.	2028.08.31.
4		부교수	전기전자공학과	2026.03.01.~2030.02.28.	2030.02.28.
5		부교수	뷰티디자인학과	2026.03.01.~2032.02.29.	
6		조교수	기계자동차공학과	2026.03.01.~2029.02.28.	
7		조교수	AI정보보안학과	2026.03.01.~2029.02.28.	
8		조교수	미디어광고콘텐츠학과	2026.03.01.~2029.02.28.	
9		조교수	도시인프라공학과	2026.03.01.~2029.02.28. ^{주1)}	승진임용 대상
10		조교수	사회복지학과	2026.03.01.~2029.02.28. ^{주1)}	승진임용 대상
11		조교수	경찰행정학과	2026.03.01.~2029.02.28.	
12		조교수	교양과정부	2026.03.01.~2029.02.28.	

주1) 재임용된 자가 승진임용되었을 경우에는 승진임용 기간을 재임용 기간으로 함.

간서명 이권준 박용환 이미숙

● 정년트랙 교원 재임용-신규임용 후 최초 재임용(3명)

No.	성명	직급	소속	재임용 기간	비고(정년)
1		교수	미래모빌리티공학과	2026.03.01.~2032.02.29.	
2		조교수	소방안전학과	2026.03.01.~2029.02.28.	
3		조교수	IT소프트웨어학과	2026.03.01.~2029.02.28.	

● 비정년트랙 교원 재임용 - 교육전담(3명)

No.	성명	직급	소속	재임용 기간	비고(정년)
1		조교수	영상제작학과	2026.03.01.~2028.02.29.	
2		조교수	전기전자공학과	2026.03.01.~2028.02.29.	
3		조교수	IT소프트웨어학과	2026.03.01.~2028.02.29.	

● 비정년트랙 교원 재임용 - 외국인교원(3명)

No.	성명	직급	소속	재임용 기간	비고(정년)
1		조교수	교양과정부	2026.03.01.~2028.02.29.	
2		조교수	교양과정부	2026.03.01.~2028.02.29.	
3		조교수	교양과정부	2026.03.01.~2028.02.29.	

● 비정년트랙 교원 재임용 - 산학협력전담 (2명)

No.	성명	직급	소속	재임용 기간	비고(정년)
1		조교수	산학협력단	2026.03.01.~2028.02.29.	
2		조교수	산학협력단	2026.03.01.~2028.02.29.	

● 정년트랙 교원 재임용 탈락 (1명)

No.	성명	직급	소속	재임용 탈락 사유	면직일
1				재임용 실적 미충족	2026.3.1.부

● 정기승진 임용 (7명)

No.	소속 학과	성명	현직급	승진직급	임용기간	비고
1	기계자동차공학과		조교수	부교수	2026.03.01. ~ 2032.02.29.	
2	도시인프라공학과		조교수	부교수	2026.03.01. ~ 2032.02.29.	
3	도시인프라공학과		조교수	부교수	2026.03.01. ~ 2032.02.29. ^{주1)}	
4	소방안전학과		조교수	부교수	2026.03.01. ~ 2032.02.29.	
5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부교수	2026.03.01. ~ 2032.02.29.	
6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부교수	2026.03.01. ~ 2032.02.29. ^{주1)}	
7	호텔항공외식경영학과		조교수	부교수	2026.03.01. ~ 2032.02.29.	

주1) 재임용된 자가 승진임용되었을 경우에는 승진임용 기간을 재임용 기간으로 함.

간서명 

<제4호 안건> 정관 변경에 관한 심의

의 장 : 정관 변경에 관한 건을 상정한 후, 상임이사에게 설명하게 하다.

상임이사 : 이사들에게 미리 배포한 자료에 의거하여 정관 변경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다.

의 장 : 정관 변경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요청하다.

이 사 들 : 정관 변경(안)을 검토한 뒤, 상호 의견을 나누고 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찬성하다.

의 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정관 변경에 관한 심의를 <별첨3>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선포하다.

6. 폐회 선언

이상으로 이사회를 마치고, 회의록 간서명자로 이미숙 이사, 박용환 이사, 이권철 이사를 정한 후 폐회를 선언하다.

2025년 12월 12일

학교법인 배달학원	이사장	심 상 덕 (서명)	<u>심상덕</u>
	이 사	김 의 래 (서명)	<u>김의래</u>
	이 사	민 병 훈 (서명)	<u>민병훈</u>
	이 사	이 미 숙 (서명)	<u>이미숙</u>
	이 사	송 기 정 (서명)	<u>송기정</u>
	이 사	박 용 환 (서명)	<u>박용환</u>
	이 사	김 병 란 (서명)	<u>김병란</u>
	이 사	이 권 철 (서명)	<u>이권철</u>
	이 사	정 승 화 (서명)	<u>정승화</u>
	감 사	강 홍 원 (서명)	<u>강홍원</u>

간서명	<u>이권철</u>	<u>박용환</u>	<u>이미숙</u>
-----	------------	------------	------------

2025회계연도 법인 1차 추가경정 예산

(2025. 3. 1. ~ 2026. 2. 28.)

1. 수입

(단위:백만원)

과 목	2025년 1차추경예산 (A)	2025년 본예산 (B)	증 감 (A-B)	비 고
전기이월자금	2,238	2,215	23	
전입및기부수입	2,875	2,345	530	- 기부수입 (+530)
교육외수입	95	90	5	- 예금이자 (+5)
계	5,208	4,650	558	

2. 지출

(단위:백만원)

과 목	2025년 1차추경예산 (A)	2025년 본예산 (B)	증 감 (A-B)	비 고
보 수	64	64		
관리운영비	107	119	-12	- 여비교통비(-19) - 회의비 외(+6)
학교전출금	1,841	1,910	-69	- 경상비전출금(-30) - 법정부담금전출금(-39)
예비비	20	20		
차기이월자금	3,176	2,537	639	- 이월자금 (639)
계	5,208	4,650	558	

간서명	이권준	박용환	이이숙
-----	-----	-----	-----

<별첨2>

예산총칙

1) 자금예산의 규모

2025회계연도 교비회계 4차 추가경정예산 자금 수입, 지출 총액은 각각 45,603,290,000원이다. 수입, 지출의 상세한 내용은 자금예산서와 같다. 예산의 단위, 산출근거의 단위는 원으로 한다.

2) 예산편성의 기본방침

2025회계연도 교비회계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다.

- ① 대학중합발전계획서 VISION 2030+ 및 재정 운영계획과의 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계획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 ② 수입 확충, 재정 효율성 제고 및 재정 성과 향상 등으로 대학의 재정건전성 확보한다.

3) 주요 사업계획의 개요

(단위:원)

수 입		지 출	
계정과목	예산액	계정과목	예산액
등록금 및 수강료수입	20,589,834,389	보수	17,677,158,371
전입 및 기부수입	21,608,510,121	관리운영비	8,424,256,177
교육부대수입	2,799,222,390	연구학생경비	15,562,941,758
교육외수입	100,829,926	교육외비용	74,247,714
		예비비	0
		고정자산매입지출	3,836,110,980
		유동·고정부채상환	55,575,000
미사용전기이월자금	531,893,174	미사용차기이월자금	0
계	45,630,290,000	계	45,630,290,000

4) 신규 장기차입금, 단기차입금 한도는 0원으로 한다

5) 예산전용



자금예산을 초과하거나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동일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6) 예비비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 및 예상치 못한 인건비 등 예산초과 지출 항목이 발생하였을 때 충당한다.

7) 국가장학금 II 유형 참여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이 시행하는 국가장학금 II 유형사업에 참여하며, 채무 이행 및 반환 등의 기준은 협약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의 업무처리 기준에 따른다.

간서명			
-----	---	--	---

2025회계연도 한라대학교 4차 추경예산

(2025. 3. 1. ~ 2026. 2. 28.)

1. 수입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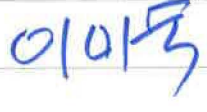
구 분	2025년 4차 추경예산 (A)	2025년 3차 추경예산 (B)	2025년 본예산 (C)	증 감 (A-B)	증 감 (A-C)	비 고
등록금 및 수강료수입	20,590	20,574	21,086	16	-496	-학과(부): 19,686(+26) -대학원: 238 -단기수강료: 666(-10)
법인전입금 수입	1,841	1,910	1,910	-69	-69	-경상비전입금: 509(-30) -법정부담금: 1,332(-39)
기부금수입	576	576	543	0	33	-일반기부금: 250 -지정기부금: 326
국고보조금 수입	19,094	18,854	15,523	240	3,571	-국가장학지원금: 8,065(-171) -교육부지원금: 9,494(+591) -기타국고지원금: 1,115(-184) -지자체지원금: 420(+4)
산학협력단 전입금	97	150	150	-53	-53	-산학협력단전입금: 97(-53)
교육부대수입	2,799	2,786	2,825	13	-26	-시설사용료: 392(+55) -학생생활관: 1,548(-13) -식당: 728(-29) -UB메트로: 84 -증명료 등: 47
교육외수입	101	131	121	-30	-20	-예금이자: 82(-30) -잡수입: 19
전기이월자금	532	532	457	0	75	-이월금: 532
계	45,630	45,513	42,615	117	3,015	

간서명 이근호 박용환 이이숙

2. 지출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4차 추경예산 (A)	2025년 3차 추경예산 (B)	2025년 본예산 (C)	증 감 (A-B)	증 감 (A-C)	비 고
보 수	17,677	17,955	16,953	-278	724	-교원보수: 11,704(-81) -직원보수: 5,973(-197)
관리·운영비	8,424	8,912	6,417	-488	2,007	-시설관리비: 3,504(+144) -일반관리비: 1,565(-43) -운영비: 3,355(-589)
연구비	251	225	217	26	34	-연구비: 251(+26)
학생경비	14,786	14,960	14,822	-174	-36	-국가장학금: 8,065(-171) -교외장학금: 758(-76) -교내장학금: 3,671(+12) -학생경비: 2,292(+61)
입시 관리비	526	478	477	48	49	-입시경비: 526(+48)
지급이자 잡손실	74	98	126	-24	-52	-사학차입금이자: 0.4 -자퇴생등록금환불등: 74(-24)
예비비	0	60	100	-60	-100	
고정자산 매입지출	3,836	2,769	3,446	1,067	390	-건물: 633(+491) -기계기구: 1,466(+106) -집기비품: 967(+438) -차량운반구: 36 -도서: 204(+2) -건설증인자산: 530(+30)
유동성장기 부채상환	56	56	56	0	0	-사학차입금상환: 56
고정부채상환	0	0	1	0	-1	
차기이월자금	0	0	0	0	0	
계	45,630	45,513	42,615	117	3,015	

간서명  박용환  이마득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44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생략) ② 제41조제7호 및 제7호의2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의 처우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6에 따른다. ③ (생략)	제44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1조제7호 및 제7호의2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의 처우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9에 따른다. ③ (현행과 같음)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준용규정 조항 변경
제68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① 교원징계의 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및 「교육공무원법」 제52조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 ③ (생략)	제68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① 교원징계의 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및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 ③ (현행과 같음)	- 사립학교법 징계사유의 시효 추가 반영
제80조(하부조직) ① 대학교 본부에 교무처, 학생처, 총무처, 기획처, 입학홍보처, 학술정보원을 두며 세부조직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 ③ (생략)	제80조(하부조직) ① 대학교 본부에 교무처, 학생처, 총무처, 기획처, <u>글로벌인재처</u> , 학술정보원을 두며 세부조직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 대학 하부조직명 변경 계획에 따른 개정
<신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간서명			
-----	--	--	--